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5882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588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소129724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차연화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이연이

변론 종결 2020. 4. 29

판결 선고 2020. 6. 1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소1297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 405, 7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분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 405, 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 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7. 17: 4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22- 20소재 매곡교차로에서 이천—용인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용인- ^덕평IC 방향과 이천— E센터 방향 동시 좌회전신호로 변경될 무렵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선행 차량을 따라 용인- >덕평I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33, 514, 420원을 지급하고, 원고 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4. 2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70%대 30%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3, 460, 094원(= 33,514,420원 x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 을 제 4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 7호증, 을 제1,2, 3호증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 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 405, 768원[=23, 460, 094원 - (33, 514, 420원 x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사정,즉 원고 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 차량의 선행차량 2대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회전을 한 점,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사이에 좌회전을 한점및 이 사건 사고의 장소와 경위, 신호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와 신호준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않은 채비보호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 실 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대 30% 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미만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판사 박성민 판사 김연수